

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증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

1. 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- 제출일자 : 2001년 6월 7일
- 회부일자 : 2001년 6월 11일

3. 제안이유

- 사무의 위임중 증평출장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이 소장에 게 위임되어 왔으나 2000년도 정부합동 감사시 『임용권 전부를 위임한 사항』 이 지적되어 위임한 인사권 중 일부를 환수하고,
- 직속기관 및 사업소장에게 6급이하 소속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을 위임하여 인사관리에 효율화를 기하고자 함

4. 주요골자

- 증평출장소장에게 권한 위임한 소속 공무원 인사권중 5급이상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을 위임대상에서 제외하고,
⇒ 6급이하 지방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을 권한위임
- 직속기관 및 사업소장에게 6급이하 전보권 위임
- 충북과학대학장에게 부교수 이하의 임용권 위임

5. 검토의견

○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

본 조례안은 증평출장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을 소장에게 위임하였으나 임용권 전부를 위임한 사항이

2000년도 정부합동감사시 지적되어 그 일부를 환수하고, 부서별 정원의 통합운영에 따라 직속기관 및 사업소장에게 6급이하 직원의 전보권을 위임하는 것으로서,

주요내용으로는 증평출장소장에게 위임한 5급이상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을 위임대상에서 제외하고,

직속기관 및 사업소장에게 부서 내 전보권한을 종전 7급 이하에서 6급 이하로 확대 위임하고,

충북과학대학장에게 6급 이하 학내 전보권과 부교수이하의 임용권을 위임하는 것임.

- ⇒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, 부서별 정원의 통합운영에 따른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관련사항을 정비하는 것으로서 조례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.

붙 임 : 충청북도사무의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